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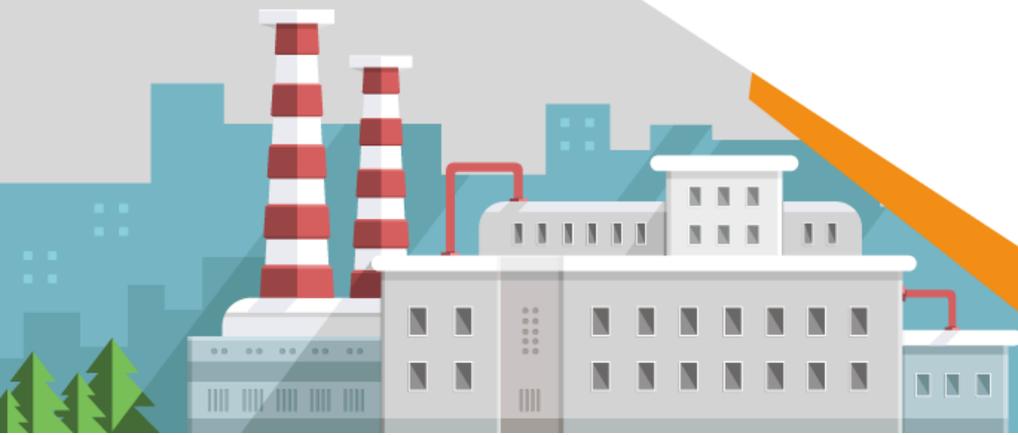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

2020. 11. 19



목차

- I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경과
- II 주요 개선사항
- III 제출 경과 규정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경과



추진 배경

- **제도간 유사중복자료 제출에 따른 기업 이행부담 감소 및 제도 효율화 필요**
 - 현행 장외·위해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사업장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필요
 -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의 취지는 다르나 하나의 흐름으로 제도 개선 및 보고서 일원화 필요
-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유해화학물질도** 물질의 양이나 특성에 따라 **외부 영향이 클 수 있으나** 위해관리계획 마련 의무가 없어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한계 있음**
- **취급량·취급형태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여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취급시설의 지정 필요
 - ※ 연구실 및 학교 등 사고시 외부영향이 적은 소량취급시설 등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추진 경과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3조의2~제23조의4 개정 공포('20.3.31.)
-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20.11.24.~'21.1.4)
- 환경부 고시 행정예고 예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행정예고 예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시행(2021. 4. 1.)



주요 개선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수준 구분(규칙 안 제19조, 별표 3의2, 별표 10)

유독물질의 취급수량 기준 마련 및 이행 수준 구분

- 유독물질도 다량 취급수량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유해화학물질별 상위·하위 규정수량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수준 구분(1군·2군)
- 혼용된 수량 기준을 일원화하고 해당 물질별 규정수량 정비

< 사고대비물질 및 유독물질 수량 기준 >

구분	현행				개선	
	규정수량 (전체공장 기준)		소량 (개별시설 기준)		규정수량 (전체공장 기준)	소량 (개별시설 기준)
사고대비물질	연간 제조·사용량	일일 보관·저장량	일일 제조·사용량	일일 보관·저장량	일일 취급량(제조·사용·보관·저장량)	일일 취급량(제조·사용·보관·저장량)
유독물질 등	-	-				

제출 면제 대상 마련(규칙 안 제19조제1항)

- 화학사고 시 외부영향이 적은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시설은 제출 면제
 -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중 하위규정수량 미만 취급사업장
- 취급물질 및 보관장소가 한시·단기적으로 변경되는 취급시설 면제
 - 항만·철도 컨테리어 저장·보관시설 등 취급하는 물질과 보관장소가 바뀌는 한시·단기 취급시설에 대해 서류 제출 등 이행의무 면제

제출 면제 대상 관련 조항(규칙 안 제19조제1항)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대상 및 수량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적용제외(면제) 대상

1. 유해화학물질을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2.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유·누출을 방지하도록 포장된 경우에 한정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8.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9. 「농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작성 및 제출 방법(규칙 안 제19조의2 및 제29조의3)

■ 제출시기 일원화하여 기업의 혼선 및 불편 해소

- (장외) 착공 30일 전 (위해) 영업허가 전 ➔ (통합) 설치검사 60일 전

신규 제출 (시설검사 60일 전)	변경 제출 (변경사항 완료 30일 전)	재제출
1군 및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총괄영향범위 확대	5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하위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취급시설 설치 · 증설, 위치변경 · 물질 종류 변경 및 추가 · 함량, 농도 및 성상 변경 · 2군 -> 1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적합 이후 시점 기준

- ※ 신규제출 / 재제출 : 규칙 안 [별지 제31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 변경제출 : 규칙 안 [별지 제33호의2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검토신청서
- ※ 부적합 통보 후 3개월 이내 제출

작성 및 제출 방법 마련(규칙 안 제19조의2, 별표4)

▪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

- 비교적 화학사고 예방 대응에 필요성이 낮고 대체가 가능한 자료는 제출 제외
※ 전기 접지 도면, 타법 적용 정보, 설비유지보수계획, 위험성 분석 등

▪ 비상대응계획 작성시 내·외부 계획 구분하여 차등 적용

- 1군은 내·외부계획, 2군은 내부계획 작성
※ **(내부)** 취급시설의 유·누출 부위 차단 및 확산방지 조치 등
(외부) 지역주민 사고 전파 및 대피 등
- 도금·염색 공장 등 밀집되어 있고 실제 사고발생시 주변 사업장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내·외부 비상대응계획을 공동 작성하도록 규정 마련
※ [별지 제31호의2서식]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PSM·SMS 등 유사 제도간 연계 유지하여 기업의 서류 중복제출 해소

- 취급물질, 취급시설, 공정도면 등 기초정보는 제출한 것으로 같음하고 심사 생략

작성 및 제출 방법 마련(규칙 안 제19조의2)

통합(안)					
항목	세부항목	1군 (>상위규정량이상)	2군 (하위 ~ 상위규정량)		
1. 기본정보	1. 일반정보 및 개요	○	○		
	2.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	○		
	3.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		
2. 시설정보	4. 공정정보	PSM, SMS로 대체			
	5. 안전장치 현황				
3. 장외영향정보	6. 사고시나리오 선정	○	○		
	7.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	○		
	8. 위험도 분석	○	○		
4. 사전관리방침	9. 안전관리계획	○	○		
	10. 비상대응체계	○	○		
5. 내부 비상대응 계획	11.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	○		
	12. 화학사고 사후조치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6. 외부 비상대응 계획	13. 지역사회와 공조			○	X
	14.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	X
	15. 지역사회 고지 계획	○	X		

검토 및 현장조사 기준 마련(규칙 안 제19조의4)

■ 취급시설의 위험도 명칭 차별화 및 현장조사 기준 구체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대상은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의 '고' 및 '중' 위험도 사업장이므로 위험도를 새롭게 구분할 필요성 제기
 - ➔ (1군) 가·나·다 위험도, (2군) 가·나·다 위험도로 구분
- 신규 영업허가 대상 시설, 3년 내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또는 법 위반 사업장 * 기타 시설 등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 기준 구체화
 - * 화학사고 및 취급시설 관련 경우로 한정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이행점검 및 절차 등 운영방안 마련(규칙 안 제19조의5)

- 1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도에 따라 이행점검 방법·주기 차등화
 - 위험도(가·나·다)에 따라 정기 이행점검 및 특별 이행점검을 동시 추진하고 기업은 매년 자가점검 실시

※ 2군 사업장은 특별 이행점검과 자가점검 실시

< 이행점검 대상 및 주기 개선 >

구분	구분	현행	개선
정기 이행점검	대상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자 (사고대비물질 다량 취급자)	1군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자)
	주기	- 이행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주기 차등(1~4년) (1군_4년/2군_3년/3군_2년/4군_1년) * 최초점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후 2년 이내	- 위험도에 따라 주기 차등 - '가' 위험도 ① 최초 5년 내, 이후 5년 + 12개월 내 ②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 제출 - '나' 및 '다' 위험도 ①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 제출로 같음
특별 이행점검	대상	① 화학사고 발생사업장 점검 필요시 불시 점검 ② 특정물질·공정대상 점검 필요시 불시 점검	① 자체점검 분석 결과, 현장점검 필요시 ② 화학사고 발생사업장 점검 필요시 ③ 특정물질·공정대상 점검 필요시

※ 부적합 → 재제출(2개월 이내), 행정처분(개선명령~영업허가 취소)

지역사회 고지 방법 구체화(법 제23조의3, 규칙 안 제19조의6) - 1군에 해당

- 1군 사업장의 주민 고지 시기, 고지 방법, 고지사항의 기록관리 등 사고대응정보 전달 · 운영체계 구체화

< 지역사회 고지방법 개선 >

구분	현행	개선
대상	모든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방법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중 택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필수)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중 택일(추가)
시기	적합 후 3개월 이내, 이후 연 1회	- 최초 : 적합 후 3개월 이내(필수), 적합연도 (추가) - 정기 : 최초 등록 기준 다음연도부터 매년
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정보요약서(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 물질정보, 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비상시 행동요령 등 ▶ 화학사고 대처를 위해 주민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별도 서식 없음 -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계획, 비상대응 활동 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 ▶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화학사고대응체계 확립에 활용

영업(변경)허가 · 신고시 제출서류(규칙 안 제29조)

■ 영업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및 절차 간소화

- 취급시설·물질 변경으로 영향범위 확대되는 경우만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제출하며 변경되는 항목만 제출
- 영향범위 미확대인 경우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 기존 영업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 1군·2군 사업장이 된 경우 영향범위가 새롭게 확인되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변경허가 진행

벌칙(법 제5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벌칙(법 제6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행정처분(규칙 안 별표 7)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서.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화학사고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8호의2	경고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1개월
어.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5호의2, 법 제35조제2항제8호의3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



경과 규정



제1조(시행일) 2021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제3항부터 제7항, 별지 제46호 및 제47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소급적용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적용제외(면제)**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변경제출**

1.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의3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2.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가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되는 경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적용제외에서 2군 또는 1군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 단위**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규칙 별표 4의 모든 항목을 작성, 제출. → **사업장 단위로 제출(작성내용은 별표4)**

다만,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대보유량은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한다. → **최대보유량 산정은 사업장 단위로**

제5조(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제19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취급시설의 위험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

개정안 시행 후 변경제출이 없는 경우 위험도

1. 고위험도: 제19조의4제1항의 가위험도 2. 중위험도: 제19조의4제1항의 나위험도 3. 저위험도: 제19조의4제1항의 다위험도

② 이 규칙 시행 전 마지막 안전진단일부터 해당 주기를 적용하고, 개정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12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해당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제46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칙 제778호 제3조에 따른 이행점검 시기에 대한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마지막으로 적합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점검 시기 및 주기를 조정하고, 제19의5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이행점검 중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는 종전의 사업장 내 취급시설의 위험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도를 적용한다. 다만, 위험도의 수준은 고위험도·중위험도·저위험도 순서로 적용한다.

③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9조의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점검주기는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주기를 적용한다.

제7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를 해야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8조(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2019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고시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유독물 지정고시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하위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및 적용제외 대상 사업장은 제출X

제9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